

I

이전지역인재(대구·경북)

□ 이전지역인재 범위

- 본사 이전지역(대구·경북)에 소재한 지방대학(대학원 제외)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  - 단,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

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=8학기, 전문대학의 경우 2년=4학기)이상 등록하고,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,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,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.

\* 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 기준을 따름

□ 대구·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

가. 대구·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,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 등의 본교
  - \*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
- 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(이원화 캠퍼스)
  - \*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,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,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,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
  - \*\*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·도의 지역인재로 포함
- 3)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- 4)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  - \*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

나. 대구·경북 소재 이전지역 학교 제외 대상

- ㉠ 「경찰대학 설치법」에 의한 경찰대학(경기)
- ㉡ 「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·해·공군사관학교(서울·경남·충북)
- ㉢ 「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(대전)
- ㉣ 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」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(경북)

## □ 그 외의 이전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[예시]

-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

- ㉠ 「고등교육법」,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
- ㉡ 「고등교육법」에 규정된 사이버대학
- ㉢ 「평생교육법」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
- ㉣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
- ㉤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

## ○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

- ㉠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- ㉡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,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

## ○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

- 가. 본교의 위치와 분교·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
  -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분교·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
  -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, 분교·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: 분교·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
  - \*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,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, 본교 학생은 부산,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
- 나.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
  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 대학 졸업 : 해당
 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(예정) : 해당
- 다.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 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해당
  -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 - \* 다만,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인재에 해당
- 라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
  -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  - 이전지역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: 비해당
- 마.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  -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 -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중: 비해당
  - \* 다만, 이전지역대학에 편·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
- 바.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
  -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해당
  -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·사관학교 중퇴자: 비해당
- 사.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  -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 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해당
  -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: 비해당

□ **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**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(지방대학)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\*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,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

□ **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**

**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**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원격대학(사이버대학은 제외)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2) 「고등교육법」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
\* (예시) 고려대 세종캠퍼스, 동국대 경주캠퍼스,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

예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</li> </ul> </li> <li>○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: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아님</li> </ul> </li> </ul>

- 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4)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**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(예시)**

- 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 상의 평생교육시설
- 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## □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2개 대학 이상 재학 중인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따름

가. 서울소재대학과 지방대학을 모두 졸업한 경우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 졸업(예정)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
나. 대학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지방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다. 대학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

- 지방대학 중퇴 후 다시 서울소재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- 서울소재대학 중퇴 후 다시 지방대학에 편·입학하여 재학 중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

라.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

- 지방대학 졸업 후 서울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
- 서울소재대학 졸업 후 지방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: 비수도권 지역인재 비해당